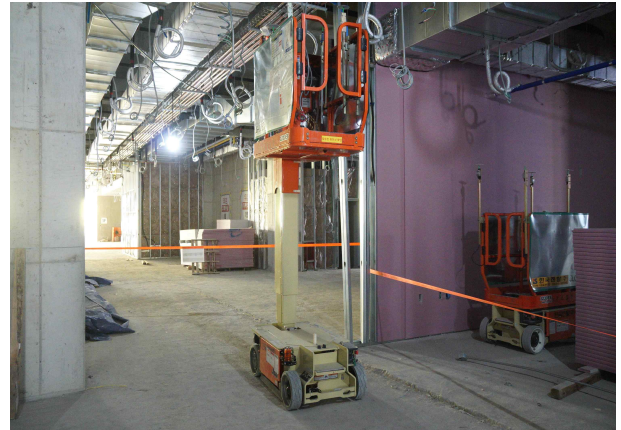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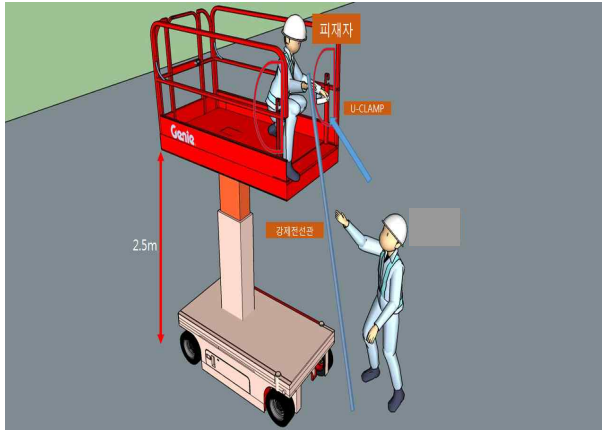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19. 1.23(수) 세종시 소재 (주)○○○건설 「○○시 ○○○○○○병원 건립공사」 현장에서 ○○○소속 작업자(소방설비공)가 고소작업대를 약 2.5m 상승시킨 후 안전문(출입문)을 개방한 상태에서 동료근로자가 건네주는 자재를 받아 고소작업대 발판에 내려놓거나 정리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고소작업대 사용 중 추락방지조치 미흡
 - 작업지휘자가 미배치된 상태에서 약 2.5m 높이로 상승시킨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중 자재를 받기 위해 안전문 임의 해체 등 작업 실시



재해 예방 대책

-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중 추락방지조치 철저
 -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 시 출입문 등 안전문을 임의로 해체 금지
 - 자재 양중작업 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후 작업대에 싣고 상승 후 작업 토록 작업방법 개선
 - 고소작업대를 사용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